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
----------	-----

발의년월일 : 1993. 3. 6.

발 의 자 :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제안이유

-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과 상위법개정에 따른 적용 규정조정.

주요골자

- 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봄.
-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재물조사위원회, 조수보호위원회, 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의 폐지.

첨부

1. 충청북도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5항중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뒤에 다만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추가한다.

(별표)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중 기획관리실소관 기획예산위원회, 재무국소관 재물조사위원회, 농림수산국소관 조수보호위원회, 지역경제국소관 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p>제4조(회의) ①~④생략</p> <p>⑤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 표〉</p> <p>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p>	<p>제4조(회의) ①~④(현행과 같음)</p> <p>⑤</p> <p style="text-align: right;">다만,</p> <p>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별 표〉</p> <p>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p>
소관별 분야 별 근거 규정	소관별 분야 별 근거 규정
<p>기 획 1. 기획예산위원회 총청북도기획업무규칙제17조</p> <p>내 무 1. 제안심사위원회 총청북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9조</p> <p>재 무 1. 재물조사위원회 국무총리훈령 제67조</p> <p>농 립 1. 화전정리심의위원회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p> <p>2. 조수보호위원회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제12조</p> <p>지 역 1. 자동차운수자문위원회 자동차운수사업법 제60조</p> <p>경 제</p>	<p>내 무 1. 제안심사위원회 총청북도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9조</p> <p>농 립 1. 화전정리심의위원회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p>